소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가점 기준 정비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일부 개선·보완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분야에 적용하던 가점 분야를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국어, 외국어 점수별 가점 비율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분야 \ 가점비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 어		- TOEIC 800 이상 - TOEFL IBT 88 이상 - TOEFL PBT 570 이상 - TEPS 720 이상 - New TEPS 399 이상	- TOEIC 600 이상 - TOEFL IBT 57 이상 - TOEFL PBT 489 이상 - TEPS 500 이상 - New TEPS 268 이상

			- TOSEL(advanced) 780 이상 - FLEX 714 이상 - PELT(main) 304 이상 - G-TELP Level 2 75 이상	- TOSEL(advanced) 580 이상 - FLEX 480 이상 - PELT(main) 242 이상 - G-TELP Level 2 48 이상
	일본어		- JLPT 2급(N2) - JPT 650 이상	- JLPT 3급(N3, N4) - JPT 550 이상
	중국어		- HSK 8급 -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 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국어·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 정 안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 TOEIC 800 이상 - TOEFL IBT 88 이상 - TOEFL PBT 570 이상 - TEPS 720 이상 - New TEPS 399 이상 - TOSEL(advanced) 780 이상 - FLEX 714 이상 - PELT(main) 304 이상 - G-TELP Level 2 75 이상	- TOEIC 600 이상 - TOEFL IBT 57 이상 - TOEFL PBT 489 이상 - TEPS 500 이상 - New TEPS 268 이상 - TOSEL(advanced) 580 이상 - FLEX 480 이상 - PELT(main) 242 이상 - G-TELP Level 2 48 이상
	일본어		- JLPT 2급(N2) - JPT 650 이상	- JLPT 3급(N3, N4) - JPT 550 이상
	중국어		- HSK 8급 -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 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국어·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88